



##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운영규정

[제목개정 2022.12. 1]

제정일	2021. 3. 1
개정일	2023. 3. 1
개정차수	2차
담당부서	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」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서울대학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12. 1)

제 2조 (위치) 센터는 동서울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3조 (주요업무) 센터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필요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학습기업 모집
2.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및 채용 지원
3.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현장 외 훈련(Off-JT) 제공
4. 학습기업 현장훈련(OJT) 지원 및 기업현장교사 파견지원
5. 학습기업 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개발 참여 및 지원
6.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평가지원
7. 학습기업 훈련관리 및 컨설팅
8. 그 밖에 학습기업 일학습병행 수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

### 제 2 장 조 직

제 4조 (구성) 센터에는 센터장, 학과장, 책임교수, 전담교직원, 운영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3. 3. 1)

제 5조 (센터장) ①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2.12. 1)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일학습병행 업무를 총괄하며, 센터의 전담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6조 (전담교직원) ① 전담교직원은 일학습병행 교육지원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임용에 관한사항은 동서울대학교 임용기준에 따른다.

③ 전담교직원은 Off-JT교육일정에 따라 주말근무를 시행하며, 주 중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전담교직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 7조 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“운영위원회”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22.12. 1)

1. 센터장 및 일학습병행 참여학과 교원 (개정 2023. 3. 1)
2. 학습기업의 대표자 : 2명 이상 (개정 2023. 3. 1)
3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1인
4.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1인
5. 일학습병행 사업 추진과 관련된 교내·외 전문가
6.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팀장 단, 지역일학습지원팀장은 발언권은 가지되,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
7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일학습병행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8조 (위원의 임면 및 위촉)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을 총장이 임면 위촉한다.

제 9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3.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1조 (회의) ① 위원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도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.

④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소정의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 단, 내부위원 또는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 및 공단 직원은 지급 불가 함.

## 제 4 장 보 칙

제12조 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